

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615호 2010. 1. 8. (금)

공 고

- 공고 제2010-11호 [2010년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고] 2
- 공고 제2010-12호 [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수 공고] 3
- 공고 제2010-13호 [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 공고] 4

【 안 내 문 】

- 북구 전자공보는 매주 월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매주 금요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북구 전자공보 확인 방법
 ⇒ 구 홈페이지(<http://www.bukgu.ulsan.kr>) → 행정정보 → 알림마당 → 북구공보에서 열람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: 문화홍보과 (☎ 219-7207 행정 7207)

2010년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고

「주민투표법」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- 다 음 -

(단위 : 명)

계	내 국 인	외 국 인	재외국민
120,566	120,527	14	25

- ※ 내 국 인 : 2009년 12월 31일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 이상의 주민
(「공직선거법」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)
- ※ 외 국 인 : 2009년 12월 31일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에 등록되어 있는 영주의 체류 자격을 갖춘 19세 이상 외국인
- ※ 재외국민 : 2009년 12월 31일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에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재외국민

2010년 1월 8일

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

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수 공고

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19세 이상의 주민수(「공직선거법」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)와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연서 주민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- 다 음 -

(단위 : 명)

19세 이상 주민총수				연서 주민수
계	내국인	재외국민	외국인	
120,556	120,527	25	4	3,014

- ※ 내 국 인 : 2009년 12월 31일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 이상의 주민
(「공직선거법」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)
- ※ 외 국 인 : 2009년 12월 31일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에 등록되어 있는 영주의 체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
- ※ 재외국민 : 2009년 12월 31일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에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재외국민

2010년 1월 8일

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

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 공고

「주민소환에 관한 법률」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역선거구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10. 1. 8.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○ 구청장

(단위 : 명)

구 분	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	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 수	비 고	
북 구	120,531	18,080	·선거구 안의 동 전체수가 3개 이상일 경우에는 1/3이상의 동에서 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5/100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.	
구 청 장	농소1동	16,001		2,400
	농소2동	20,402		3,060
	농소3동	25,778		3,867
	강동동	4,048		607
	효문동	20,576		3,087
	송정동	13,909		2,086
	양정동	9,250		1,388
	염포동	10,567		1,585

○ 구의원

(단위 : 명)

구 분		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	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수	비 고	
구 의 원	북구 가선거구	33,958	6,792	·선거구 안의 동 전체수가 3개 이상일 경우에는 1/3이상의 동에서 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/100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.	
	동 별	농소1동	16,001		3,200
		강동동	4,048		810
		송정동	13,909		2,782
	북구 나선거구	46,180	9,236	·선거구 안의 동 전체수가 2개인 경우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/100이상의 서명을 받되, 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/100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.	
	동 별	농소2동	20,402		4,080
		농소3동	25,778		5,156
	북구 다선거구	40,393	8,079	·선거구 안의 동 전체수가 3개 이상일 경우에는 1/3이상의 동에서 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/100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.	
	동 별	효문동	20,576		4,115
		양정동	9,250		1,850
염포동		10,567	2,114		

※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는 2009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 등록표에 의하여 산정하며,

1.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우리구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(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)
2.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 산정